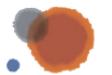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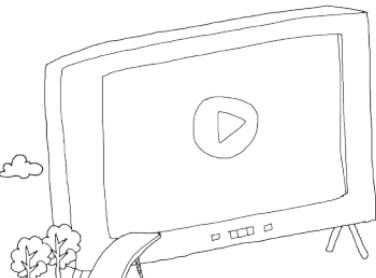


표준계약서로  
정당한 권리들 보호 받으세요!

알기쉬운  
방송분야  
표준계약서



문화체육관광부

kocca  
한국콘텐츠진흥원





#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란

방송산업 · 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 
방송영상 제작 ·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 
방송사제작사스태프대중문화예술인(가수 · 배우)매니지먼트사가  
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 
「7종의 표준계약서」입니다.

## | 표준계약서 7종 |

- 1**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
- 2**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
- 3**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
- 4**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
- 5**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
- 6** 대중문화예술인(가수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
- 7** 대중문화예술인(배우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

## 방송프로그램 제작 ·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(2종)



**목적**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

**계약 당사자** 방송사 - 제작사

### 주요내용 ▶ 대상

- <제작 표준계약서>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
- <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>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

### ▶ <제작비>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

-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

### ▶ <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>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

### ▶ <원고료 · 출연료 등 지급보증> ①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 ·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 원고료 ·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

### ▶ <수익배분>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

### ▶ <손해배상>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

### ▶ <분쟁해결>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, 「저작권법」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,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



## 방송영상프로그램

## 제작스태프(근로·하도급·업무위탁) 표준계약서 (3종)



### 목적

방송사·제작사의 인적·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·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

**계약 당사자** 방송사-제작스태프, 제작사-제작스태프

### 주요내용

#### ▶ 대상

- <근로 표준계약서>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(근로자)
- <하도급 표준계약서>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(하도급사업자)
- <업무위탁 표준계약서>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,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(업무위탁)

▶ <4대보험 가입> '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'제작스태프'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

▶ <의무> '방송사 또는 제작사'와 '제작스태프'의 안전 배려·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

▶ <계약 및 역무제공> '방송사 또는 제작사'는 '제작스태프'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,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

▶ <근로시간 및 임금>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, 임금지급 기일,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

▶ <임금의 직접청구> '제작사'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'제작스태프'는 '방송사'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
▶ <권리> '제작스태프'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·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



## 대중문화예술인(배우 · 가수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(2종)



목적

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사·제작사, 대중문화예술인,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(매니지먼트사)가 권리·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

계약 당사자

방송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,

제작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

## 주요내용

- ▶ <**지급주기**>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
    - \* 미지급 발생시,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
  - ▶ <**이행보증**>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,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함
  - ▶ <**최대촬영시간**> 일일 촬영시간은 18시간(가수의 경우 12시간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3일 초과하여 지속 할 수 없도록 함
  - ▶ <**휴식시설**>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
  - ▶ <**사고조치**>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,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  - ▶ <**미성년자 보호**>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·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
  - ▶ <**보충촬영**>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해야 함
  - ▶ <**계약불이행**>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%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% 이상을 지급
  - ▶ <**권리의 귀속**>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



##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



구분	대상	내용	제정(시행)일 (담당부서)
방송프로그램 제작·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(2종)	방송사 - 제작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사,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</li> <li>권리·수익배분 비율</li> <li>-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</li> <li>출연료 미지급 방지</li> <li>손해 배상</li> <li>분쟁해결 절차</li> </ul>	'13.8.1. 제정 (시행) (방송영상광고과)
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(근로·하도급·업무위탁) 표준계약서 (3종)	방송사 - 제작스태프, 제작사 - 제작스태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(계약 기간, 업무내용, 임금 등 명확화)</li> <li>불공정한 계약시리에 개선 (부당계약 취소 금지, 손해배상)</li> <li>안전배려 의무</li> <li>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</li> </ul>	'14.8.28. 제정 (시행), (방송영상광고과)
대중문화예술인 (배우·가수)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(2종)	방송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, 제작사 - 대중문화예술인 - 매니지먼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사 - 대중문화예술인, 제작사 - 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</li> <li>방송제작 환경 개선 (휴식공간, 사고조치, 촬영시간 등)</li> <li>출연료 미지급 방지</li> </ul>	'13.8.1. 제정 (시행) (대중문화산업과)

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

문화체육관광부  
홈페이지



자료공간



법령자료



표준계약서

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



정보마당



서식자료



표준계약서

### 문의사항 연락처

문화체육관광부 [www.mcst.go.kr](http://www.mcst.go.kr)

방송영상광고과 044-203-3232, 3239  
대중문화산업과 044-203-2464, 2465

한국콘텐츠진흥원 [www.kocca.kr](http://www.kocca.kr)

방송산업팀 061-900-6250, 6259  
미래정책개발팀 061-900-6313